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유진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5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진 G-BEST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 G-BEST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유진 G-BEST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유진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4년 02월 18일
 5. 증 권 신 고 서 효 력 발 생 일 : 2014년 03월 03일
 6. 모 집(매출) 증권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2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2조좌]
 7. 모 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유진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9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8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3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 풀이	51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54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유진 G-BEST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77764)				
(종류) 클래스	A	C	C-W	C-E	C-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7765	77766	91081	78173	A10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2조좌

(이 투자신탁은 2조좌까지 모집이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77764)				
(종류) 클래스	A	C	C-W	C-E	C-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7765	77766	91081	78173	A101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7.12.31	최초설정
2008.01.30	온라인전용 Class C-E 추가
2008.10.22	장기주식형 세제혜택 적용
2009.04.29	규약 변경 및 펀드명 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 ‘유진점프-업주식종류형투자신탁1호’ → ‘유진점프-업증권투자신탁(주식)’
2009.05.13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유진점프-업증권투자신탁(주식)’ → ‘유진G-BEST증권투자신탁(주식)’
2009.07.2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채권)의 등급 변경
2010.05.03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 및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1.02.21	Class C-I 추가
2011.11.14	책임운용인력 변경(김기봉 → 정균식)
2012.03.19	책임운용인력 변경(정균식 → 이재선)
2012.05.04	책임운용인력 변경(이재선 → 최준)
2012.09.17	책임운용인력 변경(최준 → 오세준)
2012.10.19	책임운용인력 변경(오세준 → 이재선)
2013.01.07	채권평가사 변경(KIS채권평가 → FN자산평가)
2013.08.01	책임운용인력 변경(이재선 → 박순엽)
2014.01.15	정기갱신
2014.03.03	모자구조 변경 및 Class A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저축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진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대표전화: 02-2129-33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억)	
박순엽	주식 운용 1팀장	7개	204억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00.08~04.12) 드림자산운용 (04.12~06.02) 메리츠자산운용 (08.07~13.06) 유진자산운용 주식운용1팀장(13.07.08~현재)

※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운용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	운용규모(억)
6개	193억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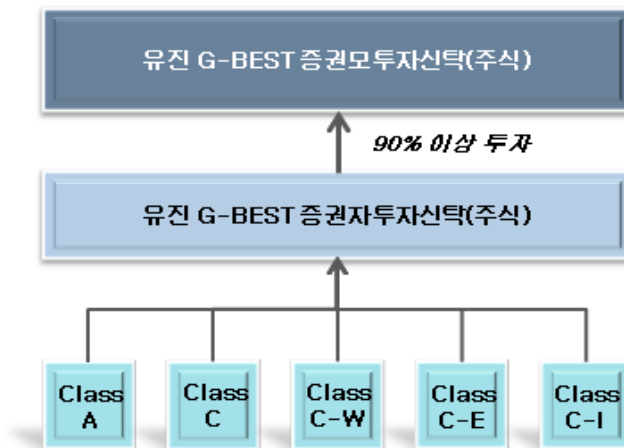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규모 산정시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간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박 순 업	2013.08 ~ 현 재
이 재 선	2012.10 ~ 2013.07
오 세 준	2012.09 ~ 2012.10
최 준	2012.05 ~ 2012.09
이 재 선	2012.03 ~ 2012.04
정 균 식	2011.11 ~ 2012.03
김 기 봉	2010.05 ~ 2011.11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운용됩니다.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Class A	Class C	Class C-W	Class C-E	Class C-I
최초설정일	2007.12.31	2007.12.31	미설정	2008.01.10	미설정
가입 자격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관리계좌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및 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온라인(On-Line)가입 전용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매입한 개인 이거나 500 억 이상 매 입한 법인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보수	집합투자업자	연 0.60%		연 0.60%	연 0.60%	연 0.60%	
	판매 회사	최초설정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연 1.00%	연 1.00%	-	연 0.34%	연 0.03%
		2014년 3월 3일 이후	연 0.60%				
	신탁업자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사무관리회사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총 보수	최초설정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연 1.65%		연 1.65%	연 0.65%	연 0.99%	연 0.68%
	2014년 3월 3일 이후	연 1.25%					

※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회적으로 부과하며, 징구된 환매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Class C의 판매회사보수는 최초설정일부터 2010년 5월 2일까지는 연 2.00%, 2010년 5월 3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는 연 1.75%,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는 연 1.50%,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는 연 1.25% 2013년 5월 3일이후부터는 연 1.00%로 차등하여 인하하였습니다.

※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 보수외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집합 투자신탁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유진 G-BEST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wth company, Global company, capital Gain company 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의 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 • 채권(A- 이상)에 40% 이하 투자 • 어음(A3- 이상) 등 40% 이하 투자
	투자목적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wth company, Global company, Gain company를 대상으로 Bottom-up Approach로 분석하고 저평가 여부, 성장의 가시성, 투자의 적시성을 판단하여 편입하는 종목발굴-투자를 진행합니다. • 저평가된 Growth company를 통한 BM대비 초과수익을, Global company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Gain company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간/월간 단위 점검 및 조정을 통한 Rebalancing을 시도합니다. • 개별 종목의 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등록신청서 제출일	2014년 2월 13일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지수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 가격이 다른 수준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이상	유진 G-BEST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단기대출	10%이하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③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주식	60%이상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②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u>A-</u>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u>A3-</u> 이상인 것
④자산유동화증권	1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집합투자증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u>다만, 법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u>
⑥장내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⑧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증권의 차입		상기의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⑩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에 의한 자금공여)
⑪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의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⑫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⑬양도성 예금증서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⑤~⑨ 및 투자제한 ②~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p>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산정</p>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p>③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p>	<p>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④ 파생상품 거래</p>	<p>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p>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p>	<p>투자신탁채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이 투자신탁채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p>	

	<p>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p> <p>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⑥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p>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을 취득하는 행위</p>	
⑦후순위채권에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사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⑧금전의 차입	<p>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법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2)법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의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p>	
⑨금전의 대여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시행령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p>	
⑩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p>	
⑪투자한도 초과	<p>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Growth company, Global company, Gain company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모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이상을 투자하여 자본수익과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비교지수: KOSPI지수 (100%)**

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Growth company, Global company, Gain company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배당이익 및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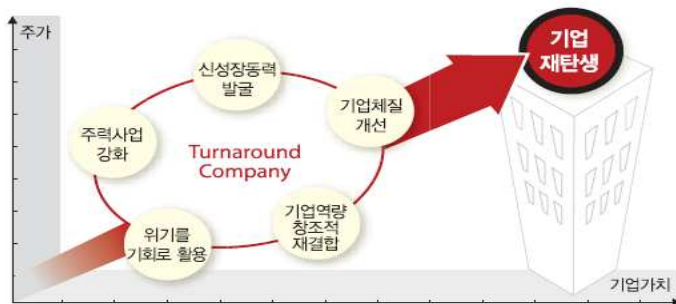
Growth company 는 현재 및 향후, 이익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Global company 는 신기술, 시장지배력 등으로 Global 경쟁력을 갖추거나 갖추 가능성 있는 기업

Gain company 는 경기 및 산업 회복기에 영업 레버리지가 크거나 구조조정으로 Turn-around하는 기업

※ 턴어라운드 기업이란?

해당기업이 재무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공적인 절차를 밟는 단계에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2) 특징 및 포트폴리오 구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wth company, Global company, Gain company를 대상으로 Bottom-up Approach로 분석하고 저평가 여부, 성장의 가시성, 투자의 적시성을 판단하여 편입하는 종목발굴·투자를 진행합니다. ● 저평가된 Growth company를 통한 BM대비 초과수익을, Global company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Gain company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간/월간 단위 점검 및 조정을 통한 Rebalancing을 시도합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y List종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편입비율을 결정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Portfolio 가이드라인 및 보조지표에 대한 고려</td> <td>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성 beta는 시장평균보다 높을 수도 있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리스크관리</td> <td>종목편입비: 시가비중+5%이내(편입시) 업종비 제한: 원칙적으로 특정 업종이 다른 업종대비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만 적용</td> </tr> </table>	Portfolio 가이드라인 및 보조지표에 대한 고려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성 beta는 시장평균보다 높을 수도 있음	리스크관리	종목편입비: 시가비중+5%이내(편입시) 업종비 제한: 원칙적으로 특정 업종이 다른 업종대비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만 적용
Portfolio 가이드라인 및 보조지표에 대한 고려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성 beta는 시장평균보다 높을 수도 있음				
리스크관리	종목편입비: 시가비중+5%이내(편입시) 업종비 제한: 원칙적으로 특정 업종이 다른 업종대비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만 적용				

3) 종목선정 예시

**Growth
company**

-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등 이익 지표들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향후 추정 이익 또한 개선될 기업
- Business Model이 현실화되어 추정된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
- 시장 또는 업종대비 PER, PBR 등 Multiple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 미래 성장성을 감안하여 적정주가대비 낮은 평가를 보이는 기업

**Global
company**

- 신 기술 등으로 미래 Global 경쟁력을 갖출 기업
- 시장 지배력이 높거나 시가총액이 커 Global화 된 기업
- 시장 또는 업종대비 PER, PBR 등 Multiple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 미래 성장성을 감안하여 적정주가대비 낮은 평가를 보이는 기업

**Gain
company**

- 장치산업 등의 성격으로 경기에 민감한 실적속 보이는 기업
-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거나 회생되는 기업
- Business Model이 현실화되어 추정된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
- 시장 또는 업종대비 PER, PBR 등 Multiple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 미래 성장성을 감안하여 적정주가대비 낮은 평가를 보이는 기업

4) 기타 투자전략

채권	주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 및 통안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 유동성 자산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며 금리 하락이 예상될 경우 채권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파생상품	주식, 채권 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헤지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투자가능 범위 내에서 매매차익 추구 목적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사전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및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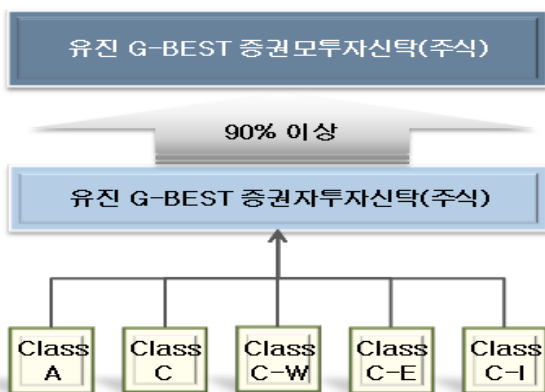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합니다.

6) 위험관리 전략

구분	정의	측정지표	관리방법
시장 리스크	주가, 이자율,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미래자산가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	-Beta	-Beta 한도 관리를 통해 민감도 관리
종목 리스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종목별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과도하게 언더퍼폼 하는 경우	-종목별/회사별/기업집단별 Exposure	-투자 Universe 및 종목별 투자비중 관리 -회사별/기업집단별 Exposure 관리
유동성 리스크	과거 6개월간의 일일 평균거래량을 감안할 때, 원활한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거래량 대비 보유 비율 -유동성 비율	-시장거래량 대비 종목별 보유비율 한도 관리
운영 리스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처리 체계의 미비나 오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		-내부통제체크리스트 시행 -시스템 장애 등 업무대체방안 -모든 통화내역 녹취를 통한 착오매매 방지

※ Beta(베타) : 비교지수의 수익률 변화에 대해 포트폴리오 성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교지수가 일정 비율만큼 변화할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그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령 비교지수가 KOSPI라고 하면 베타가 1인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KOSPI 수익률 변동폭만큼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베타가 1보다 큰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KOSPI 수익률보다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며, 베타가 1보다 작은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 G-BEST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 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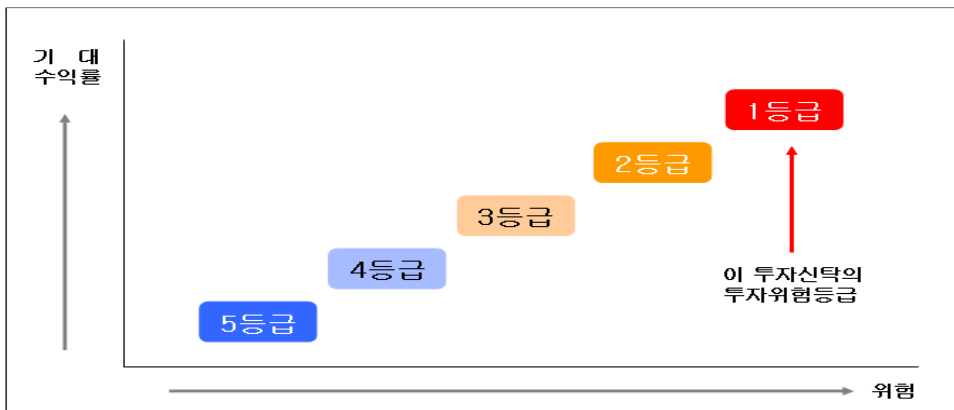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시장의 여러 변동요인에 따라 환매청구시의 기준가격과 환매일의 기준가격이 동일하지 않아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및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90%이상을 투자하는 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개별주식의 수익률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대비 <u>10%초과</u>인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u>40%초과 60%미만</u>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주식형 및 주식파생형) ·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u>10%미만</u>인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u>30%이상</u>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u>40%이하</u>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u>30%미만</u>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원금보존추구형) · 중위험자산에 <u>60%이상</u>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u>60%이상</u>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전자산운용(주)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3.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자산유동화관련 채권(A+이하), 후순위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5.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8.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9.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0.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1.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 등)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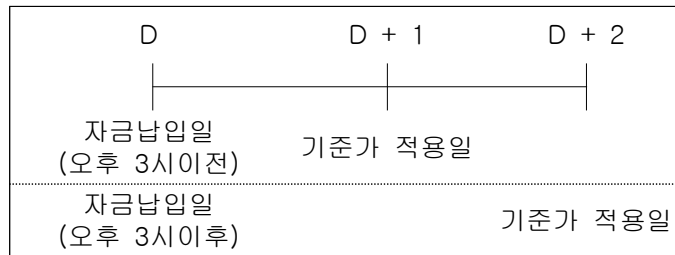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lass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lass C: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lass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관리계좌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및 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 Class C-E: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lass C-I: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환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소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D	D + 1	D + 2	D + 3
환매청구일 (오후 3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오후 3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종 류	지급비율(연간, %)					비고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W	Class C-E	Class C-I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 수익증권 보유한 기간이란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합니다.

(6)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7)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8)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9)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환매연기사유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0)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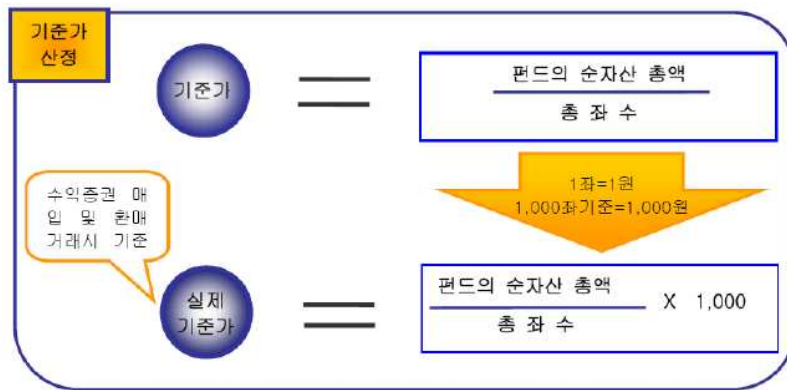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 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 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 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공시 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 장소	판매회사 각 영업점,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 판매회사· 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③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④ 비상장채무증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⑤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취득가격 2.거래가격 3.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⑥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Class A	Class C	Class C-W	Class C-E	Class C-I
가입자격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관리계좌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및 투자증권을 100억 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온라인 (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회적으로 부과하며, 징구된 환매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W	Class C-E	Class C-I		
집합투자업자보수	0.6000	0.6000	0.6000	0.6000	0.6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최초 설정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1.0000	1.0000	-	0.3400		0.0300
	2014년 3월 3일 이후	0.6000					
신탁업자보수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03	0.003	미설정	0.0027	미설정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최초설정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1.653	1.653	0.65	0.9927	0.68	-
	2014년 3월 3일 이후	1.253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최초설정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1.653	1.653	0.65	0.9927	0.68	-
	2014년 3월 3일 이후	1.253					
증권 거래비용	0.8340	0.8097	미설정	0.8213	미설정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

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12.31. ~ 2013.12.30.]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연도 : 2012.12.31. ~ 2013.12.30.]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4) 위의 합성 총보수·비용은 모두자신탁에 100% 투자하였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으며, 모자구조 변경 후의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실제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될 예정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Class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0	502	794	1,62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총보수비용포함)	230	502	794	1,624
	선취판매수수료	최초가입금액 1,000만원 × 1% = 10만원			
Class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9	605	981	2,0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총보수비용포함)	169	605	981	2,038
Class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	318	551	1,2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총보수비용포함)	102	318	551	1,221
Class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8	214	372	8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총보수비용포함)	68	214	372	832
Class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1	224	389	8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총보수비용포함)	71	224	389	869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Class A와 Class C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6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class유

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모두자신탁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기(2012.12.31 - 2013.12.30)	회계감사면제	해당사항 없음
제 5기(2011.12.31 - 2012.12.30)	한영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10.12.31 - 2011.12.30)	한영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1)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 운용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6기	제 5기	제 4기
	(2013.12.30)	(2012.12.30)	(2011.12.30)
운용자산	8,961,757,966	9,722,734,395	33,008,213,376
증권	8,651,603,800	9,239,790,674	31,586,960,25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10,154,166	482,943,721	1,421,253,12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66,861,192	387,027,025	307,032,013
자산총계	9,428,619,158	10,109,761,420	33,315,245,38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00,635,753	278,346,120	2,726,590
부채총계	400,635,753	278,346,120	2,726,590
원본	9,695,624,309	11,236,850,068	39,925,933,918
수익조정금	6,836,007	-1,136,103,432	4,141,432,954
이익잉여금	-674,476,911	-269,331,336	-10,754,848,073
자본총계	9,027,983,405	9,831,415,300	33,312,518,799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기	제 5기	제 4기
	(2012.12.31 - 2013.12.30)	(2011.12.31 - 2012.12.30)	(2010.12.31 - 2011.12.30)
운용수익	538,190,973	1,593,063,960	-10,749,546,283
이자수익	11,341,503	21,544,315	89,433,575
배당수익	101,384,517	111,957,374	341,587,150
매매/평가차익(손)	425,464,953	1,459,562,271	-11,180,567,008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2,575,2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2,575,200
기타비용	0	1,100,000	2,726,590
당기순이익	538,190,973	1,591,963,960	-10,754,848,073
매매회전율	443.17	596.76	831.59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 기준)로 합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1)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 운용

[단위: 원]

과 목	제6기(2013.12.30)		제5기(2012.12.30)		제4기(2011.12.3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310,154,166	482,943,721	482,943,721	1,421,253,126	1,421,253,126
1. 현금및현금성자산	310,154,166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8,651,603,800	8,651,603,800	9,239,790,674	9,239,790,674	31,586,960,250	31,586,960,25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466,861,192	297,059,824	387,027,025		307,032,01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84,428,767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98,185		1,004,777		4,751,263	
4. 미수배당금	81,974,100		88,962,424		302,280,750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60,140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9,428,619,158		10,109,761,420		33,315,245,389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00,635,753	240,028,603	278,346,120		2,726,59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389,115,285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776,668		5,005,267			
4. 수수료미지급금			1,100,000		1,650,000	
5. 기타미지급금	9,743,800		32,212,25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400,635,753		278,346,120		2,726,590
자 본						
1. 원 본	9,695,624,309		11,236,850,068		39,925,933,91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667,640,904		-1,405,434,768		-6,613,415,119	
(발행좌수 당기: 9,695,624,309 좌 전기: 11,236,850,068 좌 전전기: 39,925,933,918 좌)						
(기준가격 당기: 931.14 원 전기: 874.93 원 전전기: 834.36 원)						
이익잉여금	-674,476,911			-269,331,336		-10,754,848,073
수익조정금	6,836,007			-1,136,103,432		4,141,432,954
자 본 총 계		9,027,983,405		9,831,415,300		33,312,518,79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428,619,158		10,109,761,420		33,315,245,389

다. 손익계산서

(1)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 운용

[단위: 원]

과 목	제6기(2012.12.31-2013.12.30)		제5기(2011.12.31-2012.12.30)		제4기(2010.12.31-2011.12.30)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12,726,020		133,501,689		431,020,725
1. 이 자 수 익	11,341,503		21,544,315		89,433,575	
2. 배당금수익	101,384,517		111,957,374		341,587,150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933,325,674		5,170,829,053		12,805,901,029
1. 지분증권매매차익	1,932,589,314		5,170,786,147		11,288,051,02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517,850,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736,360		42,906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507,860,721		3,711,266,782		23,989,043,237
1. 지분증권매매차손	1,507,800,581		3,711,266,782		22,525,793,037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1,463,250,2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차손	60,140					
운 용 비 용		0		1,100,000		2,726,59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100,000		2,726,59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38,190,973		1,591,963,960		-10,754,848,073
최당순이익(또는 최당순손실)		0.055508646		0.141673507		-0.26936998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12.31 - 2013.12.30	112	98	4	3	19	17	97	90
2011.12.31 - 2012.12.30	399	333	9	7	296	258	112	98
2010.12.31 - 2011.12.30	110	110	503	525	214	194	399	333

(주1)2010.12.31 - 2011.12.30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229,374,681좌/2,229,374,681원

나. 종류형 펀드

(1)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A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12.31 - 2013.12.30	92	78	3	2	9	8	85	75
2011.12.31 - 2012.12.30	93	76	6	5	8	6	92	78
2010.12.31 - 2011.12.30	84	84	28	27	19	18	93	76

(주1)2010.12.31 - 2011.12.30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711,364,058좌/1,711,364,058원

(2)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C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12.31 - 2013.12.30	20	17	1	1	7	6	14	12
2011.12.31 - 2012.12.30	25	21	2	2	7	6	20	17
2010.12.31 - 2011.12.30	24	24	10	10	9	9	25	21

(주1)2010.12.31 - 2011.12.30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463,095,126좌/463,095,126원

(3)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C-E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12.31 - 2013.12.30	4	3	1	0	1	1	3	3
2011.12.31 - 2012.12.30	4	4	1	1	1	1	4	3
2010.12.31 - 2011.12.30	3	3	3	3	2	2	4	4

(주1)2010.12.31 - 2011.12.30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54,915,497좌/54,915,497원

(4)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C-I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12.31 - 2012.12.30	275	232	0	0	275	242	0	0
2010.12.31 - 2011.12.30	0	0	431	460	156	139	275	232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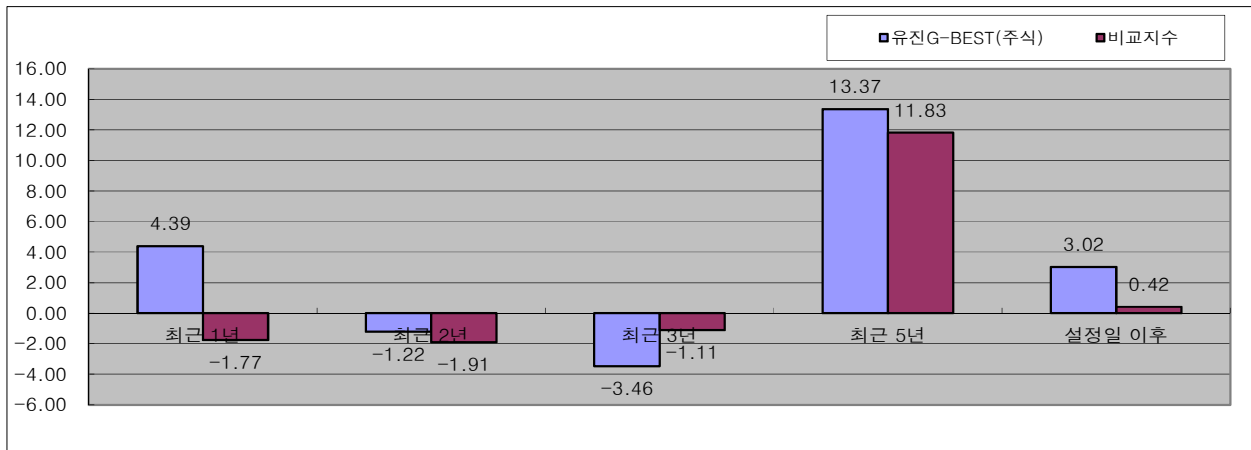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

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3.02.19 ~14.02.18	12.02.19 ~14.02.18	11.02.19 ~14.02.18	09.02.19 ~14.02.18	07.12.31 ~14.02.18
유진G-BEST(주식)	4.39	-1.22	-3.46	13.37	3.02
비교지수	-1.77	-1.91	-1.11	11.83	0.42
유진G-BEST(주식)Class A	2.70	-2.83	-5.04	11.59	1.39
비교지수	-1.77	-1.91	-1.11	11.83	0.42
유진G-BEST(주식)Class C	2.65	-3.00	-5.33	11.12	0.88
비교지수	-1.77	-1.91	-1.11	11.83	0.42
유진G-BEST(주식)Class C-E	3.38	-2.18	-4.37	12.79	2.06
비교지수	-1.77	-1.91	-1.11	11.83	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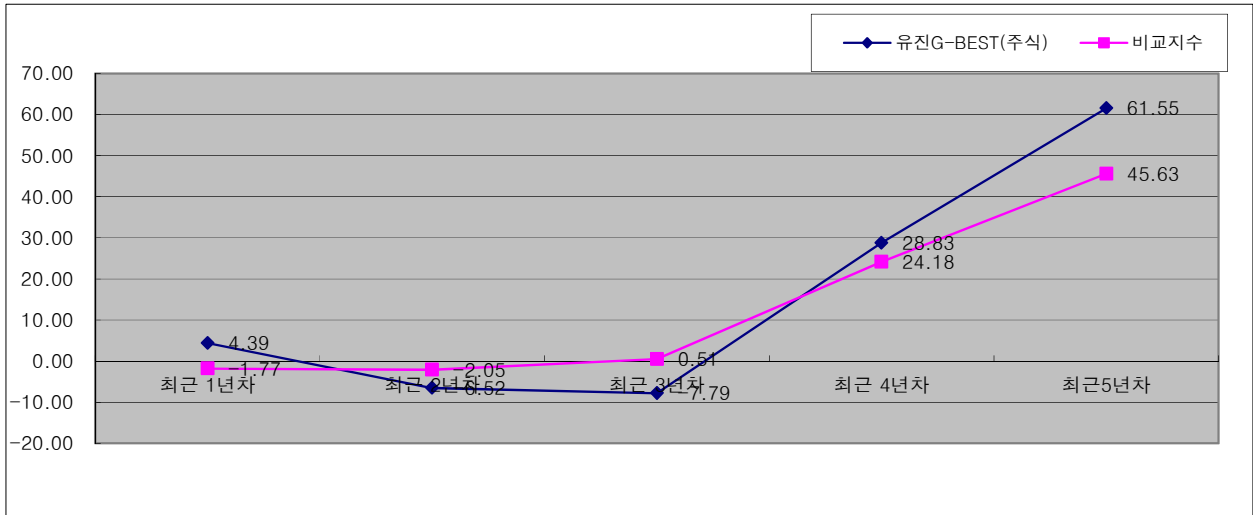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1 * [KOSPI])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3.02.19 ~14.02.18	12.02.19 ~13.02.18	11.02.19 ~12.02.18	10.02.19 ~11.02.18	09.02.19 ~10.02.18
유진G-BEST(주식)	4.39	-6.52	-7.79	28.83	61.55
비교지수	-1.77	-2.05	0.51	24.18	45.63
유진G-BEST(주식)Class A	2.70	-8.05	-9.32	26.86	59.29
비교지수	-1.77	-2.05	0.51	24.18	45.63
유진G-BEST(주식)Class C	2.65	-8.33	-9.84	25.87	58.68
비교지수	-1.77	-2.05	0.51	24.18	45.63
유진G-BEST(주식)Class C-E	3.38	-7.44	-8.62	27.83	63.28
비교지수	-1.77	-2.05	0.51	24.18	45.63

(주 1) 비교지수 : (1 * [KOSPI])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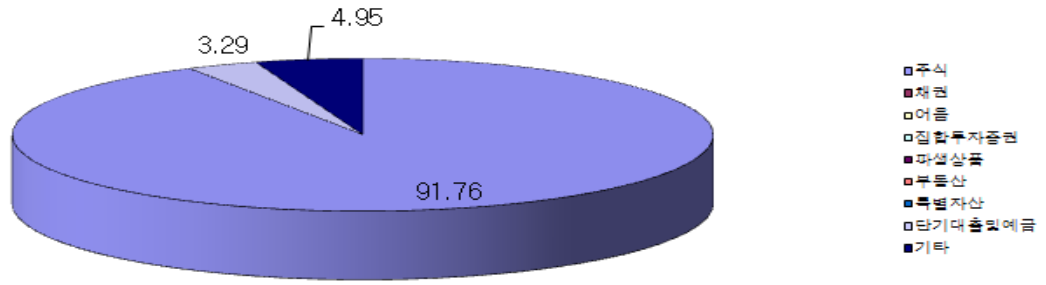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3.12.30 현재 / 단위: 억원, %]

특화펀드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87	0	0	0	0	0	0	0	0	3	5	94
	(91.7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9)	(4.95)	(100.00)
합계	87	0	0	0	0	0	0	0	0	3	5	94
	(91.7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9)	(4.95)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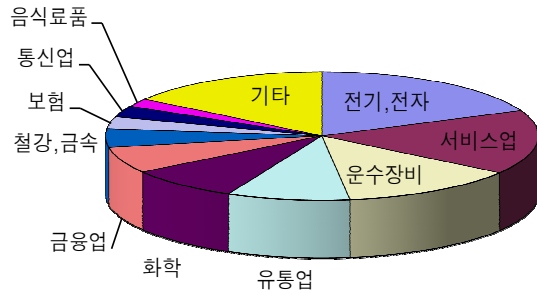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현황

[2013.12.30 현재 / 단위: 억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 전자	16	18.55
2	서비스업	14	16.20
3	운수장비	11	13.18
4	유통업	8	9.13
5	화학	7	8.39
6	금융업	6	6.62
7	철강, 금속	4	4.70
8	보험	3	3.01
9	통신업	2	2.81
10	음식료품	2	2.11
11	기타	13	15.26
	합 계	87	99.96

주)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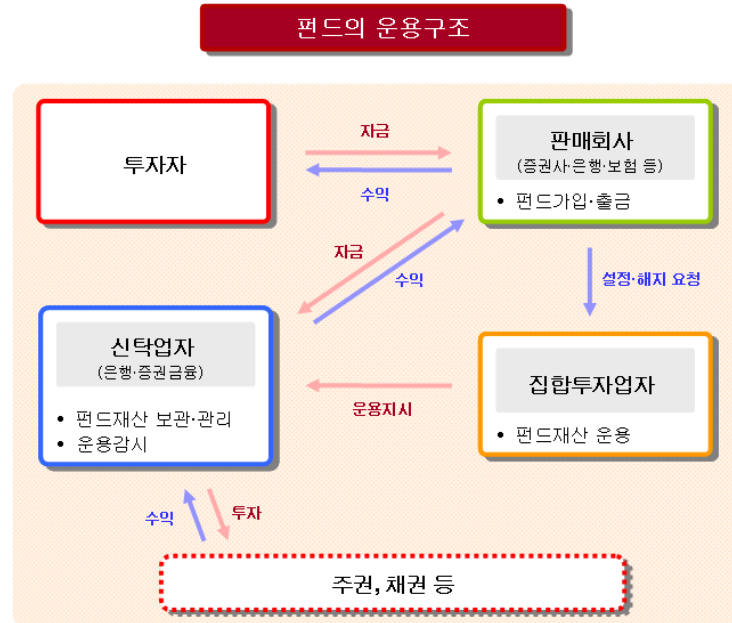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유진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유진투자증권빌딩 (☎ 02) 2129-3300, http://fund.eugenefn.com)
회 사 연 혁	1989.09 우성투자자문 설립 1991.05 한일은행 그룹에서 인수, '한일투자자문'으로 상호변경 1996.09 '한림투자신탁운용'으로 업종 전환 (대림그룹과 합작) 1998.05 '한일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1999.06 세계적인 투자가인 소로스가 경영권을 가진 서울증권 인수 2006.04 '서울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6.12 유진그룹에서 서울증권 인수,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8.01 '유진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자 본 금	200억원
주요주주현황	유진투자증권(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정 과 목	제 24 기 2013.03.31	제 23 기 2012.03.31
요약대차대조표	자산총계	23,698	23,388
	Ⅰ.현금 및 예치금	14,133	11,074
	Ⅱ.매도가능금융자산	4,446	3,219
	Ⅲ.만기보유금융자산	0	200
	Ⅳ.지분법투자지분	0	0
	Ⅴ.대출채권	652	2,938
	Ⅵ.유형자산	153	153
	Ⅶ.기타자산	4,314	5,804
	부채총계	3,693	8,870
	Ⅰ.차입부채	0	0
	Ⅱ.기타부채	3,693	8,870
	자본총계	20,005	14,518
	Ⅰ. 자본금	20,000	20,000
	Ⅱ. 자본잉여금	0	0
	Ⅲ. 자본조정	-42	-42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	-95
	Ⅴ. 이익잉여금(결손금)	70	-5,344
부채와 자본총계	23,698	23,388	
요약손익계산서	Ⅰ.영업수익	13,918	10,216
	수수료수익	9,141	9,397
	Ⅱ.영업비용	8,441	13,504
	판매비와관리비	8,145	9,672
	Ⅲ.영업이익	5,477	-3,288
	Ⅳ.영업외수익	3	17
	Ⅴ.영업외비용	47	1,233
	Ⅵ.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5,434	-4,504
	Ⅶ.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9	66
	Ⅹ.당기순이익	5,415	-4,569

라. 운용자산규모

[2014.02.18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 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711	3,952	1,145	0	1,110	4,164	0	6,636	6,520	0	4,044	28,28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주)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 (02)729-6114 www.ibk.co.kr
회사 연혁	1961.08 중소기업은행 설립 1986.11 한국기업개발금융(주) 설립 1991.03 기은전산개발(주) 설립 1992.07 기은팩토링(주) 설립 1997.11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 1999.04 자회사(주)기은캐피탈 설립 (기은개발금융(주), 기은할부금융(주) 합병) 2003.12 KOSDAQ에서 증권거래소로 이전 상장 2004.09 기은SG자산운용(주) 설립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신탁업자의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

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 (02)2168-0400 www.shinhanaitas.com
회사 연혁	2000. 06. 15 설립 2000. 09. 04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NICE피앤아이주식회사	FN자산평가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울곡로88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29 ☎ (02)3770-0400
회사연혁	2000.05 설립 2000.07 금융감독원등록	2000.06 설립 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2011.06 설립 2011.09 금융감독원 등록
자본금	50억원	30.2억원	50억원

(2)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설정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4)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종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fund.eugenefn.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 등 법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유진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15,609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① 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 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채권,특별자산,부동산(부동산 관련증권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펀드의 가격으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 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가입(매입)시 또는 환매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총회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로서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 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유진 G-BEST 증권투자신탁(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